#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

발의연월일: 2024. 06. 12.

발 의 자:김영배・이학영・홍기원

문정복 • 전현희 • 박희승

강유정 • 모경종 • 한민수

주철현 • 복기왕 • 문금주

허성무 • 민형배 • 이광희

양부남 · 임호선 · 송재봉

전진숙 · 김태선 의원

(20인)

# 제안이유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은 1962년 10월 12일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6차례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제·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 공직선거에서는 폐지된 투표·개표 절차 및 방법이 잔존하고 있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재외투표 외에도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 나. 국가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의무 및 투표권자의 성실한 투표권 행사의무,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의 투표편의 제공,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등 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확대함(안 제4조).
- 다.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경우에는 그 날을 말함)에 실시하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

- 라. 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마.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기관·단체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 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포함하여 상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言)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제외하고 상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사. 정당의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방송연설을, 언론기관과 투 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 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도를 신설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아.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제한하며, 투표운동이 과열되거나 국민생활물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집회, 자동차·확성장치,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방법의 투표운동을 제한함(안 제33조·제34조 및 제36조).
- 자.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

사무를 기준으로 명부작성, 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운영,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신청 등 국민투표관리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안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

차. 「공직선거법」의 입법례에 준하여 벌칙의 종류를 신설·삭제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각종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법률 제 호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 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 3.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대

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이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국민투표안을 말한다.

-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休務) 또는 휴업(休業)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고용주는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 ⑥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투표일 전 7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3일까지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⑦ 투표권자는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
- 제5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 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 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 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헌 법」 제129조에 따라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공고한 날을 말한다)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10명 이하의 공정국민투표지원 단을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 1항에 따른 기간 중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 0조의3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 버공정선거지원단은 각각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 표지원단을 겸하는 것으로 본다.
  -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을 각각 준용한다.

- 제6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를 마칠 때까지 사형·무기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이 법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범인이 아니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제7조(국민투표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 선거 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51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민투표에 관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민투표에 관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 규정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2장 투표권

제8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권이 있다.

제9조(나이산정기준) 투표권자의 나이는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0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 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제11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실시한다.

- 제12조(투표구) ① 투표구는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른 투표구로 한다.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 일 전일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5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국민투표에서는 그 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국민투표일의 공고) 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하 "중요정책"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장 투표인명부

- 제15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 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제8조에 따른 투표권자(제54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 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 해 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

로 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거소투표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 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표할 것을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를 포함한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군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된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명부"라 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1통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5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은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본작성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 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투표인명부 작성·확정과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 제18조(정보의 제공)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대상·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9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표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민투표

공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외에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국민투표공보(이하 "점자형국민투표공보"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되, 국민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구·시·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국민투표 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국민투표 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국민투표공보(점자형국민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

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

- 1. 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 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
- 2. 제19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 으로 발송
- 3.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인: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다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함께 발송

## 제6장 국민투표운동

- 제21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민투표운동"이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국민투표운동(이하 "투표운동"이라 한다)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①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 14일전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하는 방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 1.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4.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 6.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 직원
- 8.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
- 9.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10.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위원
- 1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12.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제24조(단체의 투표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2. 제2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기관・단체
  -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의 사적 모임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 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 5. 법령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6.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 관·단체
- 제25조(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 1.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 한다.
  - 2. 직접 말(言)로 하는 방법
- 제26조(어깨띠 등 소품)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어깨띠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 제27조(옥내모임에서의 연설·대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로 투표운동을 위한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 제28조(투표운동기구의 설치) ① 정당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 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구·시·군(하나의 구·시· 군이 2 이상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 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마다 1개소의 정당국민투표사 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에는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소장 및 유급사무직원, 설치 신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제29조(인터넷·신문 및 방송 광고) ① 정당은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신문광고는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에 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연설원을 지명하여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이하 이 조에서 "방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필요한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설은 정당별로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10회(재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서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 ③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국민투표일공고일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2일까지 제1항의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일정을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정당은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의 명칭·이용일시·연설원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방송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방송연설에서는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 송 또는 수어통역을 할 수 있다.
- ⑦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공직선거법」 제 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 ⑧ 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언론기관 등의 대담·토론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대담·토론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국민투표안에 대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 1.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 2.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단체
  - ② 제1항에서 "대담"이란 1명의 대담자가 국민투표안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란 2명 이상의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국민투표안에 관한 주

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 •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기관·단체는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해당 언론 기관 또는 기관·단체가 부담한다.
- ⑤ 제30조제6항 및 제7항은 언론기관 등의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 제32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 조의7에 따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토론자를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별로 각각 2명씩 초청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국민투표토론회"라 한다)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토론회에 참석하는 모든 정당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진 경우에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 ③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공정하게 개최하여 야 한다.

-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국민투표토론회에서 토론을 하는 사람이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 ⑥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는 그의 부담으로 국민투표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 ⑦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청각 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어통역을 할 수 있다.
- ⑨ 국민투표토론회의 토론자 선정·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투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 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2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투표운동으로 본다.
-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 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 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 제34조(시설물・인쇄물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2.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

- 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 시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정당의 사무소(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투표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설치하는 행위
- 2.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제35조(대담·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폭행·협박이나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 제36조(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

용하는 행위

- 2. 교통수단 · 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3.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4. 다수인(5명을 초과한 인원을 말한다)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5.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6.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7.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 제25조제1 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 8.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9. 연설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10.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
- 11. 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행위

# 제7장 투표

제37조(투표방법) ① 국민투표는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 ③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그 밖에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단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 ② 사전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는 사전투표소에 준용한다.
- 제39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40조(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을 투표소별로 2명씩 선정하여 국민투표일 전 2일(사전투표참관인은 국민투표일 전 7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투표참관인등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선정·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

점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등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 관인등을 신고한 정당의 수가 8개를 넘는 때에는 정당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8개에 미달하되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정당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등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이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등으로 한다.

제41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선거사무장 나건연락소장"은 각각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으로 본다.

## 제8장 개표

제42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한다.

- 제43조(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 제44조(개표참관인의 선정) 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개표소별로 6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하나의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 제45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칸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칸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 4. 어느 칸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5. ②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物形)을 기입한 것
  - 6. ②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 2. 같은 투표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 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 3. 투표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 4. 표지부분에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표 시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1. (D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D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 2. 같은 칸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 3. 기표된 칸 외에 추가로 기표되었으나 추가로 기표된 것이 어느 칸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4.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 확한 것
- 5. 도장밥으로 더럽혀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칸 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6.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도장(손도장은 제외한다)의 날인, 성명의 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기표되었으나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7.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8.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 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 9.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이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전투표
- 제46조(개표록의 작성 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 난 때에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도선 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집계·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집계하고 국

민투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개표록·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⑤ 개표록·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47조(서류 등의 보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과 그 밖에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국민투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48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1장을 준용한다.

# 제9장 확정

제49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①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

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국민투표결과를 공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대통령이 제49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 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 제51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
  -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의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본다.

- ③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 제52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 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 한다)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투표일 전 60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가 있는 때마다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3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 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 준으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및 제52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 표인명부를 작성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①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 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며, 재외투표인명부등은 제53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 정된다. 이 경우 재외투표인명부등은 해당 국민투표에 한정하여 효 력을 가진다.
  - ②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55조(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투표권자(재외투표인 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수 있다.

- 1.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제25조에 따른 투표운 동
-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이용한 제29조에 따른 방송광고
-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30조에 따른 방송연설
- 4. 제29조에 따른 인터넷광고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로 할 수 있다.
- ③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담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 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 3.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 ⑤ 제24조의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재외투표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투표인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외투표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공관 게시판 게시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투표인등에 한정한다)
- 제56조(재외투표소의 투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 전 14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7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국민투표일 전 2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 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인 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58조(재외투표의 효력)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및 제4항제6호·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투표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 다.
- 제59조(재판 관할)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 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60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국민투표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1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218조의26제1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62조(동시실시의 정의) 이 법에서 "동시실시"란 국민투표와「공직선 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63조(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누구든지 「공 직선거법」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 민투표참여 또는 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64조(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 중인 정당선거사무소를 정당국민투표사무소로 본다.
- 제65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국민투표 공보 작성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 ②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구·시·군의 장이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통지한 경우 제1 9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통지 한 것으로 본다.
- 제66조(국외부재자명부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각각 하나의 명부로 작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이 법에 따

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이 이 법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보다 늦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 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 제67조(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 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는 구분 없이 하나의 재외투표소로 설치 ·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을 포함한다)의 투표지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 송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동시실시에서 재외국민투표 투표참관인은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0에 따른 재외선거의 투표참관인이 겸임 한다.
  - ④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의 명칭,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68조(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동시실시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자를 제외한다)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제85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에 따른 보상금 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동시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 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을 준용한다.

### 제12장 소송

- 제70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71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70조에 따른 소송에서 국민 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 제72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 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 제73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과 제26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20조,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84조제1항, 제285조 및 제288조를 제외한다.
- 제74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대법원장은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 제75조(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투표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이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5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 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6조(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투표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다음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민투표 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 ④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결과를 다시 공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77조(국민투표의 연기)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연기하거나 국민투표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

조에 따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국민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국민투표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국민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 제7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이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투표 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이를 대통령 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장 보칙

제79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합

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한다.

제80조(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 각급 선거관리위 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 반행위가 국민투표의 공정을 뚜렷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81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

- 지 관리 ·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2조(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용기간, 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 기지국 위치정보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 화번호 등 인적사항
-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전송 건수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 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3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①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해당 선거 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 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4조(국민투표관리경비) ① 국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1. 국민투표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 2. 국민투표에 관한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 4.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5. 국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 6. 국민투표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 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관리경비는 국가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국민투표관리경비를 배정한 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추가로 배정하여야한다.
-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 ③ 국민투표관리경비의 산출기준·배정절차와 방법·집행·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5조(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 투표지원단원(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의 경우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중에 국민투표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부 터 국민투표일까지
-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국민투표일까지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삼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삼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6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투표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등 투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투표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 및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제218조의19제1항·제2항에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같은 법 제48조에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장 벌칙

- 제87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를 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해당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제27조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31조·제32조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선장, 입회인에게 금전·물품·음식물·차마(車馬)·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2. 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사회단체 등 기관·단체·시설 또는 야유회·동창회·친목회 그 밖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알선하거나 그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 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8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87조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89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①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투표인·연설원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한 사람
- 2. 이 법에 따른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 따라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사람에게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한 사람
-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연설원을 폭행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처벌한다.
- 1. 주모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제90조(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영향 아래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행사를 폭행·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91조(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투표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국민투표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2조(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①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 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 3. 선상투표자에게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권유·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선상투표소에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

-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2.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 3.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 지 아니하는 행위
- 4.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 5.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같은 법 제1 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제93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

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및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
  - 2. 국민투표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인에게 투표하였거나 투표 하려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사람
  - 3.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 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사람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 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5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 수한 사람
  - 2. 투표소(사전투표소·선상투표소 및 재외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 3.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 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 4.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 5.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 ②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개표 소에서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 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6조(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① 공무원이 국민투표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투표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7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

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가져가거나 파괴·훼손하거나 숨기거나 빼앗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 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8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사이버공정 국민투표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 인,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사람
  - 2.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는 공관을 포함한다)를 소란하게 하거나 어지럽힌 사람
  - 3.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국민투표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투표인명 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숨기거나 파괴·훼손 하거나 빼앗은 사람

제99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0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 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 1. 주모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제101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으로 투표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사람
  - 2.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 거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사람
  - 3.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인명부에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사람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 표권자를 올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적거나 적게 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2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3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4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36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30조제7항(제3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5조(허위사실공표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6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운 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민투표일에 투표운동을 한 사람
  - 2.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 3. 제26조를 위반하여 어깨띠나 소품 등의 규격 범위를 위반하여 투 표운동을 한 사람
  - 4.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한 사람
  - 5.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
  - 6.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저술 연예 연극 영화나 사진을 배부

- 공연 상연 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한 사람
- 7.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 8. 제36조제5호를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사람
- 9. 제36조제6호를 위반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 10. 제36조제7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전화·서신·전보·모사전 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 11. 제55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재외투표권자를 대 상으로 투표운동을 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 및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9조제8항
   ·제21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인명부 작성 사무 등을 방해하 거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 2.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 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사용 또는 유출한 사람
- 3.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 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 도·대여 또는 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하게한 사람

- 4.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 또는 제25조제1호 단서를 위반하여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한 사람
-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 6. 제35조를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사람
- 7. 제36조제9호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하게 한 사람
- 8. 제36조제10호를 위반하여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투표 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 9. 제36조제11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사람
- 10.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1조제7항·제162조제4항·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
- 11. 제41조 및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3조·제 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투표소(같은 법 제149조제3항 및 제4 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사람
- 12. 제41조 및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제 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불응한 사람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

- 13. 제41조 및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 14.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표소에 들어간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사람
- 15. 제63조를 위반하여 국민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사람
- 16. 제81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⑤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위반하여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하거나소장·유급사무직원을 둔 경우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7조를 위반하여 연설 · 대담을 한 사람
- 2. 제28조제3항(「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위반하여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 제107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98조, 제99조제2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제3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 제99조제1항, 제100조, 제103조제1항, 제10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또는 제1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 2.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 06조제4항제16호에 따른다.
- 3.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사람
- 2.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 3항·제147조제10항·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3.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사람

- 4.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공 고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오손한 사람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0조제3항, 제44조제2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 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 2.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 항, 제148조제3항, 제174조제2항에 따라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 ⑥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